

소 장

원 고 한국납세자연맹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2층 12호 (적선동, 광화문플래티넘)
대표자 회장 김선택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원주시 시청로 24, 더컴프라자 202호(무실동)
(전화: 070-8892-1030 팩스: 070-8879-0101
이메일: hdan031@gmail.com)

피 고 대통령비서실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2.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중 별지 3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비법인사단인 원고

원고는 2001년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감시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운영위원, 감사를 임원으로 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입니다(갑 제1호증 한국납세자연맹 정관).

나. 정보공개청구와 부분공개 결정

원고는 2022. 6. 30.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특수활동비 등 관련한 자료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정보공개청구서).

피고는 2022. 7. 27. 별지 1 목록 중 2항 기재 정보만 공개하고, 별지 1 목록 1, 3, 4항 정보(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와 같으며,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합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등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정보부분공개결정).

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이에 원고는 2022. 10. 26.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행정심판청구서).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1. 30.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재결서).

라. 행정소송 제기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1.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는데, 해당 재결서는 같은 해 12. 16. 발송되었음이 갑 제5호증 재결서 1쪽의 공문상의 기재로 확인되고, 원고는 해당 재결서를 같은 달 19.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소제기하는 2023. 3. 14.이 원고가 재결서를 송달받은 2022. 12. 19.뿐만 아니라, 재결서가 발송된 12. 16.부터도 90일이 지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합니다.

2.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성

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

피고(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 1이 향후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이상,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것만으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

항1)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원의 여러 판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첨부자료 1 서울행정법원 2016. 3. 23. 선고 2014구합69846 판결 9쪽, 첨부자료 2 서울행정법원 2016. 10. 20. 선고 2014구합73340 판결 16쪽, 첨부자료 3 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57274 판결 4쪽 참조).

그리고 가장 최근의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60158 판결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첨부자료 4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60158 판결 17쪽 이하 참조).

따라서 해당 사유만으로 비공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2)

1) 이 사건 정보 1의 특수활동비 자료

피고 그리고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 1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정보에 해당한다

1)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 2)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조차 예산 내역의 공개를 제한하는 국가정보원법 제12조³⁾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특수활동비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비공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 1 서울행정법원 2016. 3. 23. 선고 2014구합69846 판결 15, 16쪽 참조). 또한 과거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에서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각 해당 특수활동비의 수령자가 언제,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수령자가 그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첨부자료 5 서울행정법원 2003. 7. 9. 선고 2000구39953 판결 6쪽).

또한 특수활동비에는 ‘지출금액, 지출시기, 예산수령자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알 수는 없기에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었고(첨부자료 5 서울행정법원 2003. 7. 9. 선고 2000구39953 판결 8쪽),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첨부자료 6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누13955 판결, 첨부자

3) 제12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료 7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8668 판결).

더 나아가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60158 판결은 비공개열람·심사의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가 있는 정보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첨부자료 4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60158 판결 20쪽 3)항 참조].

따라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1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다수의 법원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저녁식사비용과 영화관람비용

피고 그리고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 2(저녁식사비용)와 이 사건 정보 3(영화관람비용)을 공개할 경우, 경호인력에 관한 비용 정보도 공개될 우려가 있고, 상호와 주소 등을 통해 대통령의 동선과 향후 일정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3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상호와 주소 등이 공개될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사용한 도시락 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60158 판결도 동일한 취지로, 상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첨부자료 4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60158 판결).

더 나아가 저녁식사비용과 영화관람비용을 통해 경호인력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단순히 간접적으로 경호에 관한 정보를 추측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불과하고, 그러한 우려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음은, 정보공개소송, 그중에서도 국회나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에서의 법원이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부부의 영화관람이나 저녁식사를 위해 이론적으로는 2명이 아니라 경호인력을 포함한다는 명목으로 수백만원이나 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더라도, 국민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서라도 외부의 영화관람을 하거나 저녁식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적 필요나 정책적 필요(예 : 문화관람 장려 등)에 따라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필요를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는 국민에게 공개되어, 그 필요성 자체의 당부와 함께, 과연 적정한 예산이 소요되었는지도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이 공개원칙을 정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한 취지에서 당연히 드러나는 입법자의 결단이며, 경호인력이 간접적으로 몇 명인지 추정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이 사용한 비용을 사실상 전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게 허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며 기존 법원의 태도와 동일합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4)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그러나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
두12946 판결),⁵⁾ 이미 집행된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이나 영화관람비용, 저
녁식사비용이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님이 명
백합니다. 더 나아가 가사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
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등).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한 특수
활동비 정보공개청구에서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각 해당 특수활동비의
수령자가 언제,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수
령자가 그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게’ 되어 있고(첨부자료 5 서울행정법원 2003. 7. 9. 선
고 2000구39953 판결 6쪽), 특수활동비에는 ‘지출금액, 지출시기, 예산수
령자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

4)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
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법리는 명백합니다.

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알 수는 없기에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었고(첨부자료 5 서울행정법원 2003. 7. 9. 선고 2000구39953 판결 8쪽),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첨부자료 6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누13955 판결, 첨부자료 7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8668 판결).

더 나아가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도시락비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60158 판결도,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첨부자료 4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60158 판결, 특히 도시락정보에 관해서는 21쪽 참조).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⁶⁾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2003. 7. 9. 선고 2000구39953 판결은 ‘국회의원이나 국회공무원에 관한 정보는 업무수행 등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

6)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공적인 임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⁷⁾ 제1항 제6호 단서 다항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고(첨부자료 5 서울행정법원 2003. 7. 9. 선고 2000구39953 판결 9쪽), 그와 같은 판단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첨부자료 6, 7 참조).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정보(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3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름을 뺀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의 개인정보, 외국인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고, 그 특성상 공무원이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도 아닌 이름이 공개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되지 않습니다. 가사 사생활의 비밀이 인정되더라도, 특수활동비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전국민의 관심사이며, 특수활동비 수령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60158 판결도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첨부자료 4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 60158 판결).

7) 판결문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항의 개정되기 전의 조항인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정보(별지 2 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 3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별지 3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 | | | |
|----|--------|------------|
| 1. | 갑 제1호증 | 한국납세자연맹 정관 |
| 1. | 갑 제2호증 | 정보공개청구서 |
| 1. | 갑 제3호증 | 정보부분공개결정 |
| 1. | 갑 제4호증 | 행정심판청구서 |

1. 갑 제5호증 재결서

첨 부 서 류

- 1. 첨부자료 1 서울행정법원 2016. 3. 23. 선고 2014구합69846 판결
- 1. 첨부자료 2 서울행정법원 2016. 10. 20. 선고 2014구합73340 판결
- 1. 첨부자료 3 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57274 판결
- 1. 첨부자료 4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60158 판결
- 1. 첨부자료 5 서울행정법원 2003. 7. 9. 선고 2000구39953 판결
- 1. 첨부자료 6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누13955 판결
- 1. 첨부자료 7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8668 판결

2023. 3.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용 재

서울행정법원 귀중

별지 1

1. 2022. 5. 10.부터 6. 30.까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현금 지급 여부 구분 표시)]
 2. 2022. 5. 10.부터 2022. 6. 30.까지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3. 윤석열 대통령이 2022. 5. 13. 서울특별시 청담동 소재 '가온'에서 저녁식사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 항목
 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 6.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관람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 항목
- 끝.

별지 2

1. 2022. 5. 10.부터 6. 30.까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현금 지급 여부 구분 표시)]
 2. 윤석열 대통령이 2022. 5. 13. 서울특별시 청담동 소재 '가온'에서 저녁식사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 항목
 3.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 6.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관람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 항목
- 끝.

별지 3

1.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나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포함), 직업, 나이, 전과, 상훈, 병역, 학력, 경력, 가족관계, 종교, 건강상태,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범죄경력, 계좌번호, 은행명, 카드번호 등 신용정보, 업체명, 회사명 등 상호와 같은 개인정보
 2. 국내가 아닌 외국의 정부, 외국 외교관, 외국 공무원, 외국인과 관련된 사항.
- 끝.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한국납세자연맹 정관
2. 갑 제2호증 정보공개청구서
3. 갑 제3호증 정보부분공개결정
4. 갑 제4호증 행정심판청구서
5. 갑 제5호증 재결서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2. 첨부자료 1 서울행정법원 2016. 3. 23. 선고 2014구합69846 판결
3. 첨부자료 2 서울행정법원 2016. 10. 20. 선고 2014구합73340 판결
4. 첨부자료 3 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57274 판결
5. 첨부자료 4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60158 판결
6. 첨부자료 5 서울행정법원 2003. 7. 9. 선고 2000구39953 판결
7. 첨부자료 6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누13955 판결
8. 첨부자료 7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8668 판결

2023.03.1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서울행정법원 귀중